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신청에 관한 의견서

사 건 2019느단3767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원 고 홍봉유
 (사건본인)
 피 고 전민준 외 3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8671 증여해
 제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대리인(이하 편의상 '원고 소송대리
 인'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21039



1.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의 효력이 사서공증에 불과하다는 취지 의 한정후견인 의견에 관하여

가. 한정후견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8671 증
 여해제 사건의 추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위임장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
 이나 사서공증에 불과하여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위임을 한 것인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① 법령을 위반한 사항, ② 무효인 법률행위, ③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위 법 제25조 참조), 이는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준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위 법 제59조 참조)¹⁾. 또한 공증인법은 사서증서 인증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촉탁인이 국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아자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참여시켜야 하고(공증인법 제59조, 제28조 참조), 촉탁인인 맹자인 경우 또는 문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 또는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인을 참여시켜야 하는바(공증인법 제59조, 제29조 참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촉탁인의 의사능력과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사서증서에 관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촉탁인인 본인인 경우 그 의사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공증인이 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실무상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은 그 인

1) 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증 당시 공증인이 사건본인의 의사능력이 있고, 위임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한정후견인의 의견과 달리 위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전민준 외 3명이 사건본인은 부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관하여

가. 전민준, 전성준, 전영신, 전영준(이하 '전민준 외 3명'이라 합니다) 은 한정후견인으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이후 한정후견인에게 부양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민준 외 3명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더 이상 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전혀 사건본인을 위한 부양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현재 사건본인은 전명신의 딸인 한지형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 53 소재 우면동 코오롱아파트 101동 207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받는 25만 원의 노령연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수입이 없습니다. 위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모시며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진 것은 전명신 뿐이며, 전민준 외 3명은 전명신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약 9억 원 상당을 공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원래부터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7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배당받은 전민준 외 3명이 이제까지 사건본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임대료 상당의 부양료를 지급하겠다는 전민준 외 3명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에 증여해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뒤늦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결국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시작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88671 증여해제 사건에 따라 사건본인이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회복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사건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할 것인바, 한정후견인의 추인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

원고 소송대리인
(사건본인)
법무법인(유)에이스

담당변호사 김 정 학



이 종 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비송)(가) 귀중

갑 제2호증